

복수전공 및 부전공에 관한 규정

제1장 복수전공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원예술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칙 제22조의2에 따른 복수전공이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복수전공이라 함은 소속 전공과정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전공과정을 이수함을 말한다.

제3조(복수전공의 범위) 본교에 설치되어있는 전학과(전공)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단, 캠퍼스 간의 동일 또는 유사한 학부(과) 간에는 복수전공을 할 수 없다.<개정 2014.03.01>

제4조(이수자격 및 시기) ① 복수전공 이수신청 자격은 신청 전 학기까지의 종합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3.5이상인 자는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단, 학교시설 및 기자재의 수용능력 각 전공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실험, 실습, 실기를 필요로 하는 교과목은 수강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소속캠퍼스의 졸업요건을 갖춘 자가 소속캠퍼스 및 타 캠퍼스의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한다면 추가 학기 등록을 통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9.1.23.>

제5조(이수신청 및 선발기준) ① 복수전공을 희망하는 자는 1학년 2학기말에 복수전공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소속 학부(과)장의 확인을 받아 복수전공을 신청하는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수전공을 신청 받은 학부(과)장은 복수전공 신청자를 대상으로 복수전공자를 선발하고 그 결과를 교학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하여야 한다.

③ 복수전공 이수자의 연간 선발인원은 학부(과)별 학년 정원 100분의 60 이내로 한다.

④ 복수전공자는 대학에서 학과(전공)별로 정한 기준인원 내에서 성적순으로 선발하되, 복수전공 학부(과)장이 자격심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시험 또는 과제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복수전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복수전공의 이수방법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이수학점) ① 복수전공 이수신청자는 교과과정 영역별 이수 학점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② 복수전공 이수학점은 복수전공학부(과)의 졸업에 필요한 전공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부전공한 학부(과)를 복수전공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이수한 부전공학점을 복수전공이수 학점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부전공자격은 소멸된다.

제7조(중도포기) ① 복수전공 이수자가 이수중에 이수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매 학기 개시 2주내에 복수전공 이수 포기서(별지 제2호 서식)에 소속 학과(부)장과 복수전공학부(과)장을 거쳐 교학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수전공으로 이미 이수한 학점은 주전공의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복수전공 이수포기서 제출 기간 내에 복수전공을 이수 포기하고 부전공을 신청할 시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수전공으로 이미 이수한 학점은 부전공의 전공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8조(학위수여) ① 복수전공이수에 필요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적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며, 이수한 각 전공의 졸업증서를 별도로 수여한다.

② 예·체능계 학부(과)를 복수전공할 경우 졸업작품을 발표하거나 졸업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단, 예체능계 학부(과) 주전공자가 예·체능계 학부(과)를 복수전공할 경우 복수전공학부(과)에서 지정한 특정과목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복수전공 소요학점 취득 전에 중도포기한 자 또는 재학 년한 이내에 이수하지 못한 자에게는 주전

공의 학위만 수여한다.

제9조(실험실습비의 징수) 복수전공이수학생으로서 실험실습을 요하는 교과목을 수강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실험실습비를 따로 징수할 수 있다.

제2장 부전공

제10조(목적) 이 규정은 예원예술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칙 제22조의 3에 따른 부전공이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지원자격) 1학년 성적이 평균평점 3.00이상이고, 32학점이상 취득한 자로서 2학년 1학기부터 부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단, 캠퍼스 간의 동일 또는 유사한 학부(과) 간에는 부전공을 할 수 없다.
<개정 2008.09.01> <개정 2014.03.01>

제12조(이수신청) 부전공 이수신청 자격은 2학년 1학기부터 매학기 초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교학지원처에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허용인원) 부전공 이수의 허용인원은 학부(과)별 학년·정원의 동수 이내로 한다.

제14조(부전공이수 및 취소) ① 주전공 이외 타 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이수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를 당해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에 성적증명서와 함께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 타 학부(과)의 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② 부전공 이수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매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에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이수학점) ① 부전공 이수는 부전공 학과에서 지정하는 부전공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과목을 전공과목과 부전공과목으로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부전공 학부(과)에서 지정한 교과목이 주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인 경우에는 부전공 교과목에서 대체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자격인정) ① 부전공을 인정받지 못할 때에는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된다.

② 부전공을 위한 소정의 과정을 마친 자는 “부전공 자격신청서”를 주전공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전공 자격취득에 관한 사정은 부전공 학부(과)장이 하며 사정결과를 주전공 학부(과)장에게 통보한다.

④ 소정의 부전공 학점을 모두 이수하면 이를 졸업증서 및 학적부에 기재한다.

제17조(실비부과) 부전공 이수시 실험실습과 기자재 사용을 요하는 전공(과)의 수강은 교과 수강자에게 소정의 실험실습비 또는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복수·부전공 이수신청서]

결 재	담당자	팀 장	처 장	총 장

복수·부전공 이수 신청서

학 부(과)			전 공		
학 번		학 년		성 명	

복 수 · 부 전 공 이 수 신 청 내 역			
이 수 신 청	학 부(과)	전 공	비 고
복수전공 · 부전공			

※ 첨부 :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위와 같이 복수·부전공 이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경 유	소 속 학 부(과)		복수·부전공 학부(과)	
	주임교수	학부(과)장	주임교수	학부(과)장

예원예술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복수·부전공 이수 포기서]

결	담당자	팀 장	처 장	총 장
재				

복수·부전공 이수 포기서

학 부(과)			전 공		
학 번		학 년		성 명	

복 수 · 부 전 공 이 수 신 청 내 역			
이 수 신 청	학 부(과)	전 공	비 고
복수전공 · 부전공			

※ 첨부 :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위와 같이 복수·부전공 포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경 유	소 속 학 부(과)		복수·부전공 학부(과)	
	주임교수	학부(과)장	주임교수	학부(과)장

예원예술대학교 총장 귀하